

# 인천 검단신도시 AB20-2블록 중흥S-클래스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## I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: 인천광역시 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 AB20-2BL
- 공급규모: 아파트 지하 최저 3층 ~ 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총 1,448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1,344세대
-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: 미정(추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참조)
-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: 총 93세대 (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)

| 주택형       | 타입  | 총 세대수 | 사전청약 세대수 | 세대별 공급면적(㎡) |         |          | 배정호수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|
|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| 주거전용        | 주거공용    | 소계       |      |    |
| 072.9531A | 72A | 100   | 93       | 72.9531     | 21.7670 | 94.7201  | 9    |    |
| 072.9511B | 72B | 108   | 100      | 72.9511     | 24.9336 | 97.8847  | 10   |    |
| 084.5032A | 84A | 537   | 499      | 84.5032     | 24.9489 | 109.4521 | 49   |    |
| 084.8058B | 84B | 275   | 255      | 84.8058     | 27.8287 | 112.6345 | 25   |    |
| 101.9971  | 101 | 422   | 392      | 101.9971    | 29.4704 | 131.4674 | -    |    |
| 147.3586  | 147 | 6     | 5        | 147.3586    | 46.1229 | 193.4815 | -    |    |
| 소계        |     | 1,448 | 1,344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93   |    |

※ 상기내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시 인천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 
 ※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 
 [평형 환산방법 : 형별면적(㎡)×0.3025 또는 형별면적(㎡)÷3.3058]

### ■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내역 (단위:세대)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   |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72A            | 72B | 84A | 84B | 101 | 147 | 계  |
| 장애인               | 인천광역시청 | 1              | 1   | 5   | 3   | -   | -   | 10 |
|                   | 경기도청   | 1              | 1   | 5   | 2   | -   | -   | 9  |
|                   | 서울시청   | 1              | 1   | 4   | 2   | -   | -   | 8  |
| 국가유공자 등 국가 보훈처 추천 |        | 1              | 1   | 5   | 3   | -   | -   | 10 |
| 장기복무 제대 군인        |        | 1              | 1   | 5   | 3   | -   | -   | 10 |
|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  |        | 1              | 1   | 8   | 4   | -   | -   | 14 |
|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  |        | 1              | 2   | 8   | 5   | -   | -   | 16 |
| 우수선수              |        | 1              | 1   | 5   | 2   | -   | -   | 9  |
|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|        | 1              | 1   | 4   | 1   | -   | -   | 7  |
| 소 계               |        | 9              | 10  | 49  | 25  | -   | -   | 93 |

### ■ 특별공급 일정계획 [예정]

| 구 분           | 일 자            | 참고사항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•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 | 2021.12.28.(화) | ▪ 일간신문 및 인천 검단신도시 중흥S-클래스 홈페이지<br>( <a href="http://www.geomdan-sclass.com">http://www.geomdan-sclass.com</a> ) |
| • 특별공급 접수     | 2022.01.07.(금) | ▪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<br>- PC :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<br>- 스마트폰앱               |
| •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| 2022.01.17.(월) |   |

※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에 한하여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가 허용됩니다. (10:00~14:00, 은행창구 접수 불가, 자격 입증 서류 지참)

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(2021.12.28.)(예정) 현재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.

- 청약통장 자격 요건(국가유공자/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)
-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 -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 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<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>

| 구분        |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85제곱미터 이하 | 300만원       | 250만원    | 200만원             |

■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

-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 다음 각 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)
  - 가.주택공급신청자
  - 나.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  - 다.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 - 라.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  - 마.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1.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이 아닌 자.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(기관추천, 다자녀, 노부모부양,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)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)

■ 당첨자 선정 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.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**부적격당첨자로 처리**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
-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(한국부동산원)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.

## ■ 행정사항
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현장접수처에서 확인가능하며,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사전 청약신청과 무관하게 사전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,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람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**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.** [미신청시 사전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]

## Ⅲ

### 유의사항

- 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, 주택공급면적, 추정분양가격, 세대평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본 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,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.
-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(한국부동산원 청약Home)을 원칙으로 하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 등)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접수처 방문접수가 가능함. (단,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시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)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, 당첨자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. 단,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.
-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**항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고시** 확정되오니 그로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**반드시 현장접수처, 홈페이지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** 바랍니다.
-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(2021.12.28.)(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,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